



## 8 중국, 산업·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포

⇒ 중국 국무원은 산업·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한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국무원이 도입할 제도적 조치를 명시한 국무원 규정\*을 공포·시행(‘26.3)

\* 国务院关于产业链供应链安全的规定

- **(제정 배경 및 개요)** 산업·공급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복원력과 보안을 강화하며, 경제사회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
  - 기존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정
  - 산업·공급망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최초의 전문 행정 법규로, 산업·공급망 이슈를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 안보 법제로 포섭해 다루는 점이 특징적
  - 국무원 제81차 상무회의(‘26.3.13.)에서 채택된 이후, 3월 31일 리창 총리의 서명 및 공포를 거쳐 시행
- **(주요 내용)** 총 18개의 조문에 걸쳐 산업·공급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제도적 조치(운영 메커니즘), 위협에 대한 조사·대응 조치 등을 규정
  - **(원칙)** 산업·공급망 안전 관련 업무는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산업·공급망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 **(운영 메커니즘)**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공급망 안전 업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연계·조정 체계를 마련
  - 또한 핵심 산업 분야와 관련해 원자재·기술·설비·제품 등을 포괄하는 중요 산업 목록인 핵심분야목록(关键领域清单)을 작성해 관리하고, 위협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 **(위협에 대한 조사·대응)** 산업·공급망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고, 외국 국가/지역, 국제기구, 개인, 단체가 중국의 산업·공급망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

〈 산업·공급망 안전에 관한 국무원 규정 주요 조항 및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산업·공급망 안전 확보 원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공급망 안전 관련 업무 체계 수립·정비 및 업무 조정</li> <li>• 각 부서, 성, 자치구, 지방 정부 등의 책임 명확화 및 협력·조율 강화</li> </ul>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합리적인 산업·공급망 배치, 디지털화·지능화, 보안·통제, 발전 촉진</li> <li>• 기업의 공급로 다각화, 공정한 경쟁 참여, 보안 위협 예방·관리 강화 장려</li> </ul>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공급망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및 국제적인 규정 제정 활동 참여</li> </ul>

구분	주요 내용
운영 메커니즘 (제도적 조치)	제6조 • 국무원 및 각 부서, 성, 지방 정부 등은 정책 계획 수립 시 산업·공급망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고려
	제7조 • 핵심 산업 분야의 산업·공급망 안전 강화를 위해 국무원이 관련 목록을 작성·관리 -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원자재·기술·장비·제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 보장
	제8조 • 산업 시설 및 공급망 핵심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정보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을 장려하며, 데이터 보안을 위한 조치 실시
	제9조 • 산업·공급망의 핵심 부문에서 안보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개선 • 국무원은 조기 경보 정보를 발령하고, 기업·협회·상공회의소·단체 등은 산업·공급망 안전 위험 요인 발견 시 관련 부서 등에 신고
	제10조 • 산업·공급망 안전 위험을 예방·통제하는 시스템 구축·개선 • 산업·공급망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장비·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복원력을 강화 • 국무원 각 부서와 지역 정부 등이 산업과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 산업·공급망 안전 위험 예방 조치 채택
	제11조 •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산업·공급망 안전을 위한 비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국무원의 관계 부서가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 조치 등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이에 협조
	제12조 • 과학기술 연구개발, 핵심 기술 혁신, 과학기술 성과를 현실 세계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장려 • 기업과 연구기관은 핵심 기술 관련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보안을 위해 위험 예방 및 통제 시스템 개선
위협 조사 및 대응 조치	제13조 • 중국 내 산업·공급망 관련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이 중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조직을 처벌
	제14조 • 국무원의 관계 부서는 국제법 및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공급망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차별·금지 조치 등)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지원하는 외국 국가/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절차에 따라 상응 조치(교역 금지·제한, 특별세 부과 등)를 실시 -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 목록 등재 및 조치 가능
	제15조 • 국무원의 관계 부서는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국 기업·개인과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중국을 차별하는 행위 등으로 중국 산업·공급망 안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외국인의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대응 조치(수출입, 투자, 거래·협력, 입국 및 체류 등과 관련한 금지·제한 조치 등)를 실시

출처 : 중국 국무원 (2026.3.31.)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4/content\\_7064838.htm](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604/content_7064838.htm)

[https://www.moj.gov.cn/pub/sfbgw/gwxw/xwyw/202604/t20260407\\_533569.html](https://www.moj.gov.cn/pub/sfbgw/gwxw/xwyw/202604/t20260407_533569.html)